

시·군법원의 조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 글은 지난 2008년 11월 4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판사 이윤성)에서 주최한 '조정위원 연구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상태** |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 소액사건의 사물관할

**Q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까지인가?
A 2,000만 원 이하이다.**

〈해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2,000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이다(소액사건 심판규칙 제1조의 2).

〈민사 제1심 사물관할표〉

구분	소송목적의 값 (소가)	사건부호	제2심 법원
소액사건	2,000만 원 이하	가소	지방법원 항소부
단독 사건	중액 단독 사건 2,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가단	지방법원 항소부
	고액 단독 사건 8,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가단	고등법원
합의사건	1억 원 초과	가합	고등법원

* 고액단독사건은 종전에는 5천만 원 초과였으나, 2008년 3월 1일부터 8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2,000만 원 미만은 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으나 2,000만 원 이하는 2,000만 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인 사건도 소액사건이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민사 제1심의 '사물관할(事物管轄)'은 위의 표와 같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2.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Q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법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A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만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해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고 한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①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②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은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特則)'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 일본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이 있으나(일본사법서사법 제3조 제6호), 우리나라 법무사는 아직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없다.

3. 조정과 판결의 차이

Q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 경험칙(조리)과 실정에 맞도록 분쟁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A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라도 조리에 맞도록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해설〉 법률에 조정은 상호양해를 통하여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라도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이다(민사조정법 제1조). 따라서 조정은 법규에 따라 일도양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판결과 다르고, 반드시 '상호의 양보'를 필요로 하는 화해와도 다르다(송민 95-1 재판예규). 그러나 일단 성립된 조정조서는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29조).

조정조서는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既判力)이 생기므로 그 효력을 다룰려면 준재심에 의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461조),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면 기일지정신청(期日指定申請)을 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 58668 판결). 따라서 독립한 '조

정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는 불가능하다(실무제요 547쪽). 조정조서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조정조서로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고(동법 제28조), 송달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4. 시·군법원의 조정사건 관할

Q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이 넘는 사건도 시·군법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A 시·군법원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시·군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법원조직법 제34조). ①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시·군법원만 관할한다), ②화해·독촉 및 조정과 관한 사건(소송목적의 값의 다과에 불구하고, 시·군법원만 관할한다), ③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한 즉결사건(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도 중복 관할한다)(형사소송법 제4조) ④협의를 이혼의 확인(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도 중복 관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따라서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은 2,000만 원 이하 사건만 관할하나,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 및 조정은 2,000만 원 초과사건도 관할한다.

시·군법원은 그 이외에도 다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조). 1)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중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대상인 다음 사건. ①집행문부여의 소, ②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③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本案)으로 하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집행(채권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포함한다), 대체집행, 간접강제, 재산명시·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제, 재산조회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또,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5. 조정 당사자의 호칭

Q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경우, 조정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호칭하는가?

A 조정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호칭한다.

〈해설〉 조정사건에는 처음부터 '조정신청(調停申請)' 한 사건과 소송계속중인 사건을 조정회부 한 사건의 두 종류가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 제6조). 조정 신청한 사건은 조정 당사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고, 조정 회부 한 사건은 조정당사자를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원고와 피고로 호칭한다(실무제요 518쪽).

조정에서는 당사자 자신이 분쟁해결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사소송법의 선정 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8조 제1항). 민사조정법은 그 대신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

대표 당사자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한 조정 조항안의 수락,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에 갈음할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대리인의 선임은 이를 하지 못한다(동법 제18조).

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Q 조정안에 대하여 한 쪽은 승낙하는데, 다른 한 쪽이 거부하면, 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A 당사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조정담당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

지 않은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調停)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합의된 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따라서 위 결정을 하는데, 한 쪽의 승낙여부와는 상관없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동법 제34조 제4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강제조정'이라고 하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실효되고 소송으로 이행된다. 조정신청 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과의 차액(5분의 4)의 인지를 보정해야 한다(동법 제36조).

7. 조정위원의 출석

Q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된 조정위원이 1명만 출석한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는가?

A 조정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미리 조정위원으로 위촉한 자를 가리키고(민사조정법 제10조), 후자는 위와 같이 위촉된 조정위원 중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조정장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가리킨다(동법 제10조의 2).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동법 제8조). 조정장은 조정담당 판사,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되고, 시·군법원에서는 시·군 법원 판사가 조정장이 된다(동법 제9조). 따라서 조정위원 1명만 출석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없다.

조정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열 수 있고, 그 기일이 끝난 뒤 조정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부칙 제6조 제11항, 실무제요 538쪽).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민사조정규칙 제14조).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동 규칙 제15조).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친구관계 등 특별한 친분이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장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회피'하여야 한다(송민 2001-8 재판예규 제9조).

8. 조정위원의 권한

Q 조정위원은 조정에 관여하고, 조정장의 촉탁에 따라 사실조사,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가?

A 조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사실조사,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1인으로서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것이 그 본무이나, 그 밖에 조정장의 촉탁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좀 더 조정이 필요한 사건은 속행할 수 있고, 조정위원 중 1인을 '주심조정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10조, 민사조정규칙 제10조).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조위위원규칙 제6조).

9. 조정위원의 의무

Q 조정위원을 그만 둔 후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누설해도 되는가?

A 그만두어도 남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설〉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조정할 사건으로는 대체로 사건이 비교적 복잡한 사건,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사건,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는데, 전문분야별 조정위원은 조정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출석하여 주도적으로 조정절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재민 2001-8 재판예규 제12조).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다소의 수를 누설하지 못한다. 이를 누설한 때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조정법 제41조 제1항).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를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죄만은 고소가 있어서 공소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제3항).

10. 소송의 지연손해금

Q 피고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5%로 조정하는가?

A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연 20%이다.

〈해설〉 법정이율은 민사는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사는 '연 6%'(상법 제54조)이나, 소송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약정이율의 상한은 등록된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2007년 10월 4일부터 연 49%이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률시행령 제5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부터 연 30%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동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무**